

부동산 취득세 간편 안내

납세의무자

매매, 증여, 상속, 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

신고기한

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납부

단,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취득시기

- 매매 등 유상 승계취득 :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,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
 - 증여 등 무상 승계취득 : 계약일
 - 상속으로 인한 취득 : 상속개시일 (사망일)
 -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 : 사용승인일, 임시사용승인일,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
- ※ 등기일이 잔금 지급일, 계약일 등 취득시기보다 빠른 경우 : 등기일

세 율

| 구 분 | | 세율합계 (농특세포함)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특세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|
| 토지, 일반건축물의 유상승계 취득 | | 4.6% | 4.0% | 0.4% | 0.2% | |
| 주택의 유상취득 | 6억이하 | 1.1%(1.3%) | 1% | 0.1% | 0.2% | 전용면적 85㎡이하 주거용 부동산은 농특세 0.2%제외 |
| | 6억초과 ~ 9억이하 | 2.2%(2.4%) | 2% | 0.2% | 0.2% | |
| | 9억초과 | 3.3%(3.5%) | 3% | 0.3% | 0.2% | |
| 증여 등 무상승계 | | 3.8%(4.0%) | 3.5% | 0.3% | 0.2% | |
| 상속 | 과세 | 2.96%(3.16%) | 2.8% | 0.16% | 0.2% | |
| | 비과세 | 0.96% | 0.8% | 0.16% | - | |
| 원시취득(신축) | | 2.96%(3.16%) | 2.8% | 0.16% | 0.2% | |

거래 유형별 취득신고 구비서류

| 구 분 | 유상승계취득(매매) | |
|------|---|--|
| | 개인 간 거래 | 법인이 포함된 거래 |
| 구비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득세 신고서 ▶ 매매 계약서 ▶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(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) ※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거래시 추가 제출서류 ▶ 취득자의 소득증명 ▶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(금융거래내역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득세 신고서 ▶ 매매 계약서 ▶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(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) ▶ 법인장부 ※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 보다 큰 경우 신고가액을 인정할 때 추가 제출서류 ▶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|

| 구 분 | 무상승계취득(증여) | |
|------|--|--|
| | 일반증여 | 부담부 증여 |
| 구비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득세 신고서 ▶ 검인받은 증여 계약서 (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득세 신고서 ▶ 검인받은 부담부 증여 계약서 (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) ※ 부담부(채무) 부분 입증 제출서류 ▶ 공통 : 수증자의 소득증명 ▶ 전세권 : 전세(임대차)계약서 ▶ 근저당 : 부채 잔액증명서, 대출금 승계 동의서 |

| 구 분 | 무상승계취득(상속) | |
|------|---|--|
| | 법정상속 | 협의상속 |
| 구비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득세 신고서 ▶ 피상속인(망자)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▶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득세 신고서 ▶ 상속재산협의분할서 ▶ 피상속인(망자)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▶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|

| 구분 | 집합건물(아파트, 연립) 분양 취득 |
|------|--|
| 구비서류 | (최초계약자) ▶ 취득세 신고서 ▶ 분양계약서(사본) ▶ 분양금 납입내역 ▶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(검인시 제외) |
| | (분양권승계자) ▶ 취득세 신고서 ▶ 분양계약서(사본) ▶ 분양금 납입내역 ▶ 전매계약서 ▶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(검인시 제외) ※ 옵션가액 및 분양권 프리미엄은 취득가액에 포함됨. |

가산세

* 취득 후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

■ 신고불성실 가산세 :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
▶ 무신고 가산세

- 부정 무신고 가산세 : 40%
- 단순 무신고 가산세 : 20%
-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: 10% (6개월이내:16%)

▶ 과소신고 가산세

-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: 40% + (과소신고세액-부정과소신고세액)×10%
-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 : 10%

■ 납부불성실 가산세 : 법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▶ 1일 10만분의 25 × 납부지연일수 × (본세 + 지방교육세)

지방세 감면 안내

지방세 감면 신청은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일정기간
감면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면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유형별 감면 신청 구비서류 및

| 구 분 | “지식산업센터” 최초분양 받는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감면신청 구비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득세 신고서 ▶ 서울특별시세 감면신청서 ▶ 분양계약서 ▶ 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서 또는 입주계약 확인서 ▶ 시행사로부터 받은 입금내역서 ▶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▶ 공장배치도 또는 사업장배치도 |
| 감면요건 |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 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분양 받은 입주자 ※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한정 |
| 취득세 세율적용 (2019년기준) | (산업단지 : 중과제외 지역) ▶ (개인, 법인 납세자) 최초 분양 받는자 : 세율 4.6% × 50%감면 세율적용 = 2.3% (중과지역) ▶ 개인납세자 : 중과 세율적용 안함. 최초분양 받는자 50%감면 세율 적용 = 2.3% ▶ 법인납세자: 중과 세율적용. 최초분양 받는자 50%감면 세율 적용 = 4.7% |
| 감면요건 위반 (추징사유) | 1.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 까지 직접사용 아니하거나 2.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★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신고납부 해야 가산세 부담 없음. |

 감면절차 문의 : 세무1과 재산세팀(02-2627-2346), 법인관리팀(02-2627-2348)

| 구 분 | “임대주택” 감면신청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감면신청 구비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득세 신고서 ▶ 서울특별시세 감면신청서 ▶ 분양계약서(매입임대사업자) 또는 사용승인 서류(건설임대사업자) ▶ 부동산거래신고필증 ▶ 임대사업자등록증(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필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임대사업자 요건 및 임대물건 | <p>※ 임대사업자 :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건설임대주택 : 건축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 (다만,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미착공시 제외) ※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대상 안 됨 ▶ 매입임대주택 : 분양 취득자, 매입 취득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 및 오피스텔 ※ 단독주택은 감면대상 안 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취득세 세율적용 (2019년기준)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건설임대사업자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매입임대사업자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전용면적60㎡ 이하</td> <td>공동주택</td> <td>100%감면</td> <td>100%감면</td> </tr> <tr> <td>(주거용)오피스텔</td> <td>×</td> <td>100%감면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전용면적60㎡ 초과 85㎡이하 (장기임대주택만 해당 일반임대주택 ×)</td> <td>20호이상 취득</td> <td rowspan="2">50%감면 (2019년부터)</td> <td rowspan="2">(장기임대주택)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 취득 시</td> </tr> <tr> <td>20호이상+추가시 (추가분만) 20호미만+추가로 20호이상시 (20호~추가분까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구 분 | 건설임대사업자 | 매입임대사업자 | 비 고 | 전용면적60㎡ 이하 | 공동주택 | 100%감면 | 100%감면 | (주거용)오피스텔 | × | 100%감면 | 전용면적60㎡ 초과 85㎡이하 (장기임대주택만 해당 일반임대주택 ×) | 20호이상 취득 | 50%감면 (2019년부터) | (장기임대주택)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 취득 시 | 20호이상+추가시 (추가분만) 20호미만+추가로 20호이상시 (20호~추가분까지) |
| 구 분 | 건설임대사업자 | 매입임대사업자 | 비 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전용면적60㎡ 이하 | 공동주택 | 100%감면 | 100%감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(주거용)오피스텔 | × | 100%감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전용면적60㎡ 초과 85㎡이하 (장기임대주택만 해당 일반임대주택 ×) | 20호이상 취득 | 50%감면 (2019년부터) | (장기임대주택)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 취득 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20호이상+추가시 (추가분만) 20호미만+추가로 20호이상시 (20호~추가분까지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감면요건 위반 (추징사유) | <p>1.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 까지 직접사용 아니하거나 2. 해당용으로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</p> <p>★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신고납부 해야 가산세 부담 없음.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감면절차 문의 : 세무1과 재산세팀(02-2627-2346), 법인관리팀(02-2627-2348)

법인 부동산 취득세 “중과” 안내

- ◆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여부를 아래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◆ 우리 금천구 시흥동, 독산동, 가산동은 대도시(과밀억제권역)로 세법적용을 하나 가산동에 위치한 산업단지관리공단(일부지번 제외)은 대도시 예외 적용
 ⇒ 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중과대상 지역 여부를 세무1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아래 도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“중과세의 예외업종”이 아닌 경우에 한함.
 (중과세의 예외 업종 : 일반과세 / 산업단지 : 일반과세)
- ◆ 법인설립 / 지점설치 / 본.지점을 대도시(서울시)로 전입함에 따른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

| 법인소재지 | 법인 설립 | (산업단지 외) 대도시 물건 취득 | 중과구분 (1차) | 법 인 변동사항 | 중과구분 (2차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과밀억제권 = 대도시 (서울) | 5년경과 | 직접사용 | × | | | |
| | | 임대/단순매입 | × | | | |
| | 5년미만 | 직접사용 | ○ | | | |
| | | 임대/단순매입 | ○ | | | |
| 과밀억제권 = 대도시 (서울 외) | 5년경과 | 직접사용 (전입하면서 포함) | ○ | | | |
| | | 임대/단순매입 | × | 취득 후 5년 이내 대도시 전입 (직접사용) | ○ (추징) | |
| | 5년미만 | 직접사용 (전입하면서 포함) | ○ | | | |
| | | 임대/단순매입 | ○ | | | |
| 지 방 = 산업단지 | 5년경과 | 직접사용 (전입하면서 포함) | ○ | | | |
| | | 임대/단순매입 | × | 취득 후 5년 이내 대도시 전입 (직접사용) | ○ (추징) | |
| | 5년미만 | 직접사용 (전입하면서 포함) | ○ | | | |
| | | 임대/단순매입 | × | 취득 후 5년 이내 대도시 전입 (직접사용) | ○ (추징) | |

재산세 납부 일정

납세의무자

- 6월 1일 현재(주택, 주택이외 건축물, 선박) 소유자
 ⇒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자 6월 1일에 주고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,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(전소유자)에게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.

재산세 부과 : 년 2회 (7월, 9월)

- 7월(정기분) : 주택(1/2), 건축물(부속토지 제외), 선박
 ▶ 납부기간 : 매년 7. 16. ~ 7. 31.
- 9월(정기분) : 주택(1/2), 토지(건축물부속토지, 나대지 등)
 ▶ 납부기간 : 매년 9. 16. ~ 9. 30.

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/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. (단, 재산세 본세 10만원 미만은 7월에 일시고지함)

재산세 세부담의 상한

| 구 분 | | 세부담 상한율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주 택 | 공시가격 3억원 이하 | 직전연도 재산세의 105% | |
| | 공시가격 3억 ~ 6억원 이하 | 직전연도 재산세의 110% | |
| | 공시가격 6억원 초과 | 직전연도 재산세의 130% | |
| 토 지, 건축물 | | 직전연도 재산세의 150% | |
| 선박, 항공기 | | 직전연도 재산세의 150% | |

? 재산세 관련 문의 : 세무1과 재산세팀(02-2627-2346), 법인관리팀(02-2627-2348)

편리한 지방세 전자납부 방법

- 지방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-

스마트폰 이용 납부 - '서울시 세금납부(STAX)'

- 스마트폰으로 「앱스토어, Play 스토어」에서 '서울시 세금납부'로 조회·설치 후 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(국내 13개 모든 카드)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, PAYCO, SSGPAY, 네이버페이, 국민·삼성·현대·신한·롯데·농협 앱카드)로 납부

지방세인터넷(etax.seoul.go.kr) 이용 납부

- etax시스템(etax.seoul.go.kr)접속 ▶ 조회납부 ▶ 납세번호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 선택 ▶ 납부(은행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)



전용(가상)계좌 이용 납부

- **전용계좌은행** :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우체국, 씨티은행, 농협, 수협,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
- **납부 방법** :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무통장입금 등
※ 타은행 계좌이체시 이체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

| | | |
|-------|-----|-----------|
| 신한 | 한 | |
| 우리 | 리 | |
| KEB하나 | 나 | |
| 국민 | 민 | "고지서에 인쇄된 |
| 기업 | 업 | 은행 전용계좌를 |
| 우체국 | 국 | 이용해 주세요" |
| citi | 씨티 | |
| 농협 | 협 | |
| 수협 | 협 | |
| 카카오뱅크 | 카카오 | |
| 케이뱅크 | 케이 | |

ARS 이용 납부

- ARS 전용전화(☎1599-3900)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(신한은행만가능)나 신용카드(국내 13개 모든 카드)로 납부

자동이체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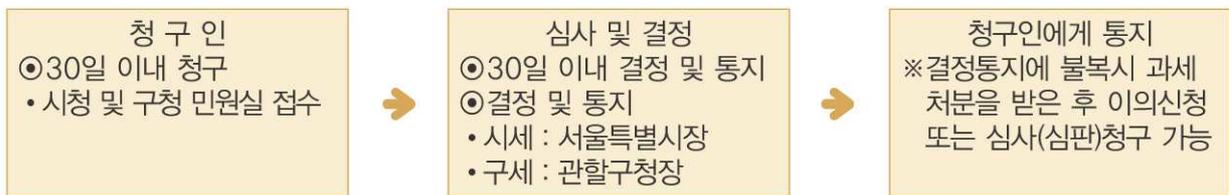
- 종이고지서(정기분)를 받지 않고 **이메일**로 받아 보시고 납기내 전자 납부시 **350원의 마일리지**(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) 적립 및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, **자동이체**까지 함께 신청하여 납기내 납부시에는 **500원의 마일리지**와 함께 추가로 **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**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☞ **전자고지** 신청은 서울시 ETAX(etax.seoul.go.kr)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**계좌자동이체**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, 인터넷지로,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(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또는 구청방문 신청만 가능)

“지방세 구제제도”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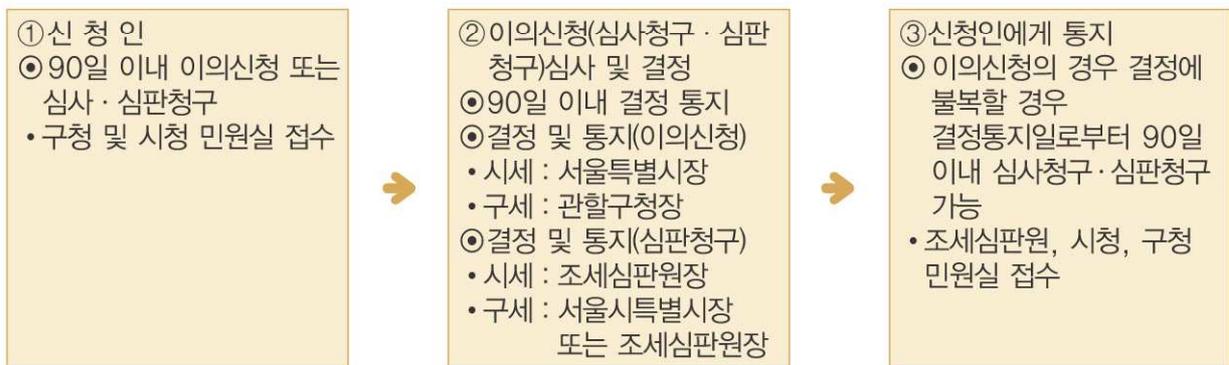
지방세 구제 절차

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, 심사청구·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 등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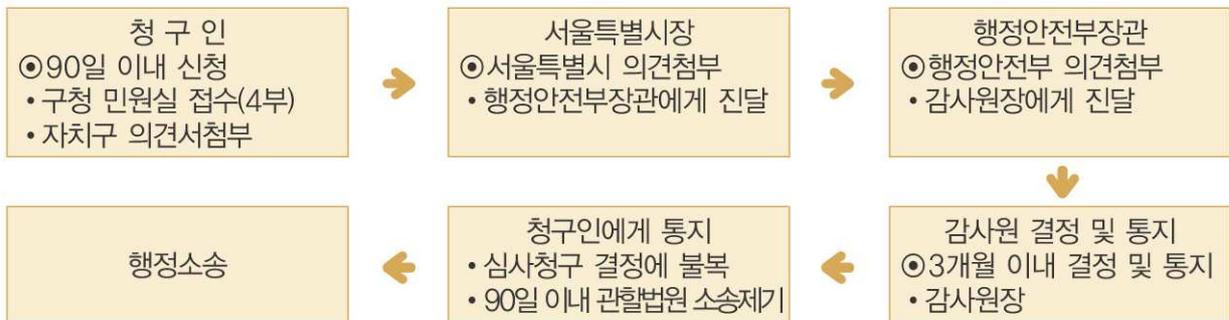
◆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



◆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·심판청구 절차



◆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



※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? 구제절차 문의: 세무1과(02)2627-2345 / 세무2과(02)2627-2350

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제도

일반적 경정청구

-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서를 제출(신고납부)한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일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신고납부한 지방세(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)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청구가능하며
- 과다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경정청구는 가능, 경정청구 결정 불복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가능

※ 청구절차

- ▶ (청구인) 경정청구서 제출 → 과세관청(구청 세무과)
- ▶ (과세관청) 경정청구 결정통지(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) → 청구인

기한 후 신고 : 가산세 감면

-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신고 기한(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)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과세권자(구청 세무과)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%(1개월이내 신고), 20%(6개월이내 신고)감면해 주는 제도.
- ▶ 법정신고 기한 경과 1개월이내 신고시 : 신고불성실 가산세 50% 감면
 - ☞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을 받은 후 목적 외 사용(임대 등) 및 매각 등으로 감면요건 위반으로 추징 대상이 된 경우 (예시)

| 2019. 1. 1. | 2019. 7. 1. | 2019. 8. 30. | 2019. 9. 30.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(지식산업센터 감면) | 지식산업센터 임대 제공으로 목적외 사용 | 법정 신고납부기한 | 기한 후 신고 기한 |
| 지식산업센터를 고유 목적사업 사용으로 취득세 감면신청(50%감면) | (5년 이내 다른 용도사용으로 감면요건 위반) | (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) | 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) ※기한 후 신고기한이내에 부과했다면 감면 안됨. |

- ▶ 법정신고 기한 경과 6개월이내 신고시 : 신고불성실 가산세 20% 감면

우리 동네 “마을세무사” 안내

마을세무사란?

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에게 마을(동)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(洞) 담당 세무사

※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활동은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재능기부입니다.

이용방법

- 세무관련 상담(국세, 지방세)
 - 비대면 상담(전화·팩스·이메일 등의 방법) ⇒ 필요시 대면상담
- 불복청구 지원(지방세에 한함)
 -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
 - 납세자가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청구서 작성 등 결정 시까지 지원

금천구 마을세무사 현황 (現 마을세무사 임기는 2021. 12. 31.까지)

| 연번 | 담당동 | 세무사 | 사무실 | | 비고 |
|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전화 | 팩스 | |
| 1 | 가산동 | 김준혁 | 02-853-6900 | 02-853-6950 | |
| 2 | 가산동 | 이성경 | 02-6246-8621 | 02-6499-8869 | |
| 3 | 가산동 | 신동희 | 02-6012-6653 | 02-6012-6658 | |
| 4 | 독산1동 | 박도영 | 02-877-3600 | 02-2027-5480 | |
| 5 | 독산2동 | 이중현 | 02-862-1293 | 02-862-1292 | |
| 6 | 독산3동 | 이태훈 | 02-866-7389 | 02-866-7388 | |
| 7 | 독산4동 | 김수민 | 02-2135-1977 | 02-2135-1922 | |
| 8 | 시흥1동 | 이하림 | 02-6949-1211 | 0504-716-0995 | |
| 9 | 시흥2동 | 박영주 | 02-2627-3636 | 02-2627-3639 | |
| 10 | 시흥3동 | 박부현 | 02-808-1112 | 02-808-1113 | |
| 11 | 시흥4동 | 배재윤 | 02-597-3478 | 0507-883-5232 | |
| 12 | 시흥5동 | 김현배 | 02-865-4235 | 02-866-4235 | |

▶ 마을세무사 관련 문의 : 세무1과(02)2627-1222

지방세 납세자 보호관

납세자 보호관

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 위해 '18.1.1.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민원감사담당관(통합민원지원센터팀)배치(1명) 02)2627-2265

지방세 고충해결사



▶ 역할

-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

▶ 권한

-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
-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
- 위법·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

월별 지방세 주요 일정 안내

| 월별 | 주요 일정 | 비고 |
|-----|--|---|
| 1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10% 세액공제 정기분 등록면허세(면허분) 고지서 발송: 10일~15일 |
| 3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/분할납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7.5% 세액공제 |
| 4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가격 결정·공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별주택(단독 등)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·공시 |
| 5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신고납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 및 구청(세무과)에 동시 가능 |
| 6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세(1기분)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/분할납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5% 세액공제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: 10일~15일 |
| 7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기분 재산세(주택분1/2, 건축물분) 납부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세(재산분): 사업소연면적 330㎡초과인 경우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: 10일~15일 ※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함 |
| 8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세(균등분) 납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세(균등분) 고지서 발송: 10일~15일 -개인(세대주),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대상 |
| 9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기분 재산세(주택분1/2, 토지분)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/분할납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: 10일~15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2.5% 세액공제 |
| 12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세(2기분) 납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: 10일~15일 |
| 매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소득세(특별징수) : 10일한 주민세(종업원분) : 10일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소득세(특별징수): 종업원 급여 원천징수액의 10% 납부 주민세(종업원분): 종업원 월 급여총액이 135백만원 초과 사업장 |
| 수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고납부세목 수시납부·미납부 수시부과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(압류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면허세 수시 신고납부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지방세 감면 위반 수시부과 감면자료 세무조사 |